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18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권칠승·박홍배·김 윤

서미화 · 김준형 · 송옥주

정준호 · 임호선 · 민병덕

전진숙 · 문금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 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을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보훈병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훈병원에"를 "보훈병원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등"으로 한다.

제42조의2 전단 중 "보훈병원"을 각각 "보훈병원등"으로 한다. 제73조의2 전단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	제42조(진료) ①
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	
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u>보훈병원(이하</u>	<u>보훈병원(이하 "보</u>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훈병원"이라 한다)과 「공공보
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	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
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	<u></u> 보
<u>훈병원</u> 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훈병원과「공공보건의료에 관

- 1. ~ 3. (생략)
- ⑥ (생략)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1. ~ 4. (생 략)
- ⑧ (생 략)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저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
공보건의료기관(이하 "보훈병
<u>원등"이라 한다)</u>
<u>보훈병원등에</u>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u>보훈병원등</u>
1. ~ 4.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1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 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 가가 부담한다.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 <u>보</u>
훈병	병원등		
		<u>보훈병원등</u>	
		· 	
			_
73조	스의2(·	상이등급의 판정을	빋
기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പി	11 -1		
۱۱۱	대한	의료지원)	
	대한 	의료지원) 	
	대한 	의료지원) 	
	대한 	의료지원) 	
	대한 	의료지원) 	
	대한 	의료지원) 	
	대한 	의료지원)	
		의료지원)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